



01

해외 주요 국가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미국

미국 Contents

I. 국가 및 산업현황	5
1. 경제활동 인구	5
2. 사업장수	5
3. 산업재해현황	6
 II. 산업재해예방 구조	 9
1. 행정체계	9
2. 법체계	9
(1) 제정경위	9
(2) 특징	10
3. 의무이행 확보	14
(1) 감독	14
(2) 수사	17
(3) 특징	20
4. 그간의 정책	21
(1) 기존 시행 주요 산재예방정책 및 사망사고 미친 영향	21
(2) 최근 정책 동향	21
 【덧붙임】작업장-특정 기획 감독	 27

I

국가 및 산업현황

1. 경제활동 인구

- 총인구¹⁾ : 331,893,745명('21.7.1.)
- 주요 업종별 근로자수²⁾ ('21)

구 분	근로자수(명)	점유율(%)	구 분	근로자수(명)	점유율(%)
전 체	143,759,144	100.0	-	-	-
농·임·수산·광업	1,759,538	1.2	교육, 보건서비스업	22,695,331	15.8
건설업	7,413,458	5.1	레저, 접객서비스업	14,129,072	9.8
제조업	12,299,558	8.6	기타 서비스업	4,146,306	2.9
무역, 운송,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27,542,861	19.2	연방정부	2,882,603	2.0
정보통신업	2,838,225	2.0	주 정부	4,543,980	3.2
금융업	8,366,456	5.8	지방정부	13,639,808	9.5
전문기술, 사업서비스업	21,292,432	14.8	분류불가	209,516	0.1

2. 사업장수

- 사업장수³⁾ : 9,828,100개소('18)
- 규모별 사업장수

규모	1~4인	5~10인	11~19인	20~499인	500인 이상
사업장수(개소)	3,752,163	4,765,210	645,970	644,241	20,516
점유율(%)	38.2	48.5	6.6	6.5	0.2

※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 22,733,369개소

1) U.S. Census Bureau QuickFacts(2021)

2)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1) 『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QCEW) program』

3) Statistics of U.S. Business 및 Nonemployer Statistics, Census Bureau, 미국 소상공인 통계 현황과 시사점 (2022, 소상공인 브리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훈식 부연구위원)

3. 산업재해현황(사고 사망자)

- 사고사망자('20) : 4,764명
- 사고사망만인율⁴⁾ 연도별 추이



- 성별 현황 : 남성 4,377명(91.9%), 여성 387명(8.1%)
- 연령별 현황

구 분	사고사망자(명)	점유율(%)
전 체	4,764	100.0
16세 미만	14	0.3
16~17세	12	0.2
18~19세	66	1.4
20~24세	260	5.5
25~34세	833	17.5
35~44세	898	18.8
45~54세	954	20.0
55~64세	1051	22.1
65세 이상	676	14.2

4) 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사고사망자 비율 (근로자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QCEW) program', 사망자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nd Fatal Injuries Profiles')

- 발생형태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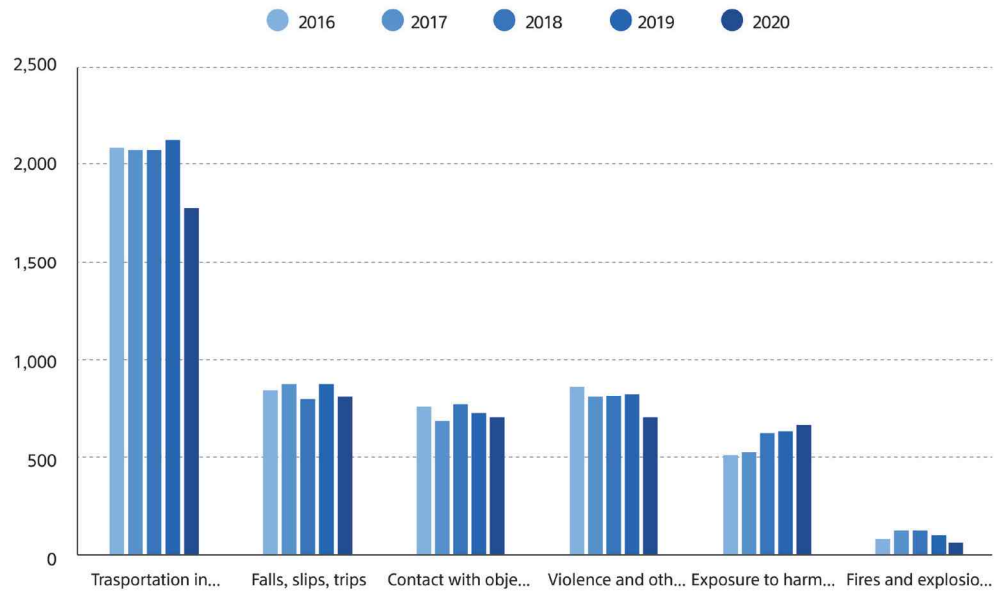
구 분	사고사망자(명)	점유율(%)
전 체	4,764	100.0
사람 또는 동물에 의한 폭행, 상해	705	14.8
교통사고	1,778	37.3
화재 또는 폭발	71	1.5
넘어짐, 미끄러짐	805	16.9
유해물질 또는 환경에 노출	672	14.1
물체 및 설비와 접촉, 부딪힘	716	15.0
기타	17	0.4

- 업종별 현황

구 분	사고사망자(명)	점유율(%)
전 체	4,764	100.0
농업임업수산업및광업	589	12.4
건 설 업	1,008	21.2
제 조 업	340	7.1
무역, 운송 및 전기수도가스 공급업	1,254	26.3
정보통신업	31	0.7
금융,보험,부동산업	93	2.0
전문기술 및 사업서비스업	482	10.1
교육 및 보건서비스업	145	3.0
레저,오락,접객서비스업	219	4.6
기타 서비스업	188	3.9
주정부, 지방정부	415	8.7

- 발생 형태별 분포('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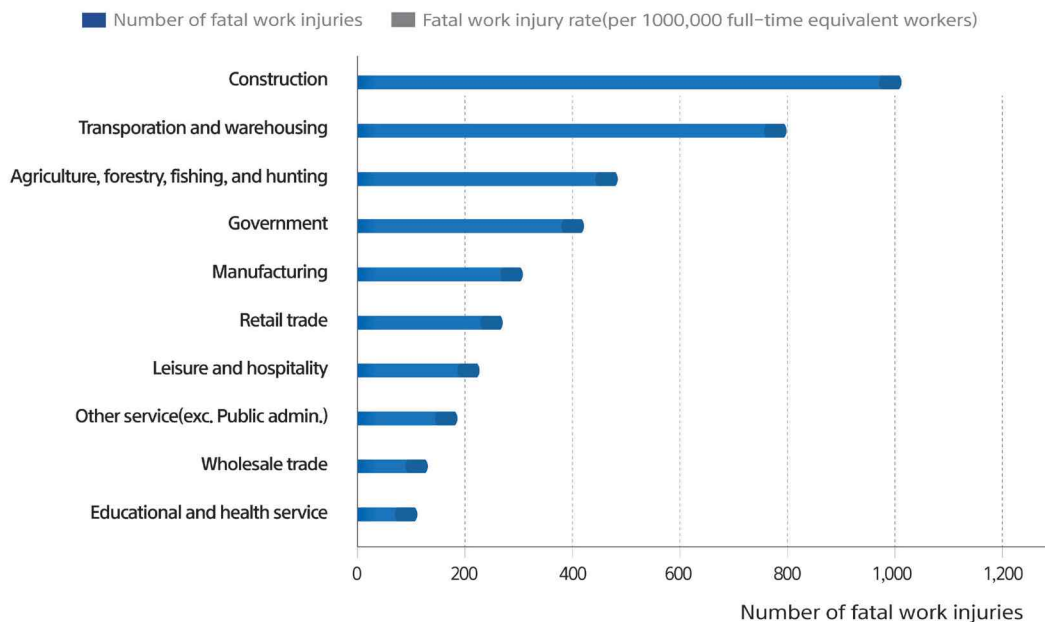
- 기간중 사망재해는 '교통사고', '넘어짐, 미끄러짐', '물체 및 설비와 접촉'순으로 분포하고, '20년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는 줄어든 반면 '유해물질 또는 환경에 노출'로 인한 재해는 다소 증가



- 세부 업종별 분포('20)

- '건설업', '운수·창고업', '농·임·수산 및 수렵업' 순으로 분포

Number of fatal work injuries, by industry sector, 2020



II

산업재해예방 구조

1. 행정체계

(1)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 1884년, 내무부(Interior) 소속으로 설립
- 1903년, 상업노동부(Commerce and Labor) 소속으로 변경
- 1913년, Howard Taft 대통령: 노동부법에 서명, 노동부 설립
- 산재예방 관련 하부조직은 보상프로그램운영부(4개업종 국한)와 OSHA(외청)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청(OSHA)

: 노동부 산하 외청조직으로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설립

- 주요 임무
 -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제정 (standard development)
 - 작업장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 준수 감독 (enforcement)
 - 작업장 안전관리 협력지원 사업 (consultation assistance)
- 미션 :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위해 연수 및 교육 지원과 법규 제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
- 주요 사업 : 근로자 대상 관련 정보 및 교육, 연수 프로그램 제공, 관련 법규 제정 및 집행, 사업장 감독 등

2. 법체계

(1) 제정경위

시기	주요내용
1891년	탄광에 대한 연방차원의 규칙 제정
1893년	철도에 대한 연방차원의 규칙 제정
1912년	성냥공장에서의 인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법 제정
2차대전 이후	개별적인 연방법(탄광안전법, 석유광업안전보건법) 탄생
1960년 후반	· 산재가 경제적 손실 초래·유발한다는 인식 확대 · 안전보건은 국가가 관여해야 한다는 공통인식 조성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OSHAct') 제정

- 1970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연방법의 제정을 요청하는 노동계의 요구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안전보건 확보의 필요성 인식

구 분	업무상 사망자	비고	
연방법률	OSH Act	미 의회 제정(1970년)	상·하원통과 대통령 서명
행정(명령) 규칙	29 CFR	29 CFR 1915: 조선업 29 CFR 1917: 해양터미널 29 CFR 1918: 항만작업 29 CFR 1926: 건설업 29 CFR 1928: 농업	노동부장관
주 법률	주별 산업안전보건법	OSH Act보다 엄격한 기준	주정부

(2) 특징

- 법 체계

- (연방 OSH Act)

-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에 의거 연방의회에서 제정되었으며, 미국 연방정부 관할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
- 연방 및 주·지방정부에는 미적용⁵⁾, 사기업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적용⁶⁾
- OSH Act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
- 사용자는 동법이 정하는 각종 규정을 숙지, 근로자에게 필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근로자는 사용자 등에게 아래 권리 행사 가능

- 사업장 조사에 대해 OSHA에 비공개 민원 제기⁷⁾
- 위험에 대한 정보와 훈련, 위험 방지 방법 요청⁸⁾
- 사업장 산재 기록, 위험 조사 및 측정(모니터링) 결과, 근로자 의료기록⁹⁾
- OSHA의 조사 참여 또는 조사관에게 개별적으로 진술¹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권리 행사 또는 조사 요구를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보복·차별을 당한 경우 소(訴) 제기
-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보복·차별 당한 경우 소(訴) 제기

5) 주정부 및 지방자치기관은 법의 정의에 따라 사업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공무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OSH Act §18에 따라 각 주는 연방기준과 동일수준 이상의 자체적인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정부 및 지방자치기관 공무원들을 동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론, 정진우(2014), 103쪽

7) OSH Act §8(f).

8) OSH Act §21.

9) OSH Act §8(c).

10) OSH Act §8(e).

- 총 34개 조문으로, 입법취지·정의·적용 등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고(§2~4), 사용자와 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5), 노동부장관이 제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설정(§6), 일반적 의무의 실효성 확보 조치 및 기관 등에 관한 규정 (§7~10), 벌칙 규정(§17) 등으로 구성

Section 1 – Introduction(총칙)

Section 2 – Congressional Findings and Purpose(의회의 조사결과 및 목적)

Section 3 – Definitions(용어 정의)

Section 4 – Applicability of This Act(법의 적용범위)

Section 5 – Duties(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Section 6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산업안전보건기준)

Section 7 – Advisory Committees; Administration(자문위원회)

Section 8 – Inspections, Investigations, and Recordkeeping(점검·재해조사 및 기록 유지)

Section 9 – Citations(위반장)

Section 10 – Procedure for Enforcement(이의신청의 심의)

Section 11 – Judicial Review(법원의 심의)

Section 12 –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Section 13 – Procedures to Counteract Imminent Dangers(긴박한 위험에의 대응절차)

Section 14 – Representation in Civil Litigation(민사소송에서의 대리인)

Section 15 –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업무상 비밀 유지)

Section 16 – Variations, Tolerances, and Exemptions(법 적용의 예외)

Section 17 – Penalties(벌칙)

Section 18 – State Jurisdiction and State Plans(주의 관할권 및 안전보건계획)

Section 19 – Federal Agency Safety Programs and Responsibilities(연방정보의 산업안전보건 계획과 책임)

Section 20 – Research and Related Activities(연구활동)

Section 21 – Training and Employee Education(근로자의 교육·훈련)

Section 22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Section 23 – Grants to the States(주에 대한 보조금)

Section 24 – Statistics(통계)

Section 25 – Audits(감사)

Section 26 – Annual Report(연차 보고)

Section 27 – National Commission on State Workmen's Compensation Laws(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연방위원회)

Section 28 – Economic Assistance to Small Businesses(소규모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Section 29 – Additional Assistant Secretary of Labor(OSHA 청장관련 사항)

Section 30 – Additional Positions

Section 31 – Emergency Locator Beacons

Section 32 – Separ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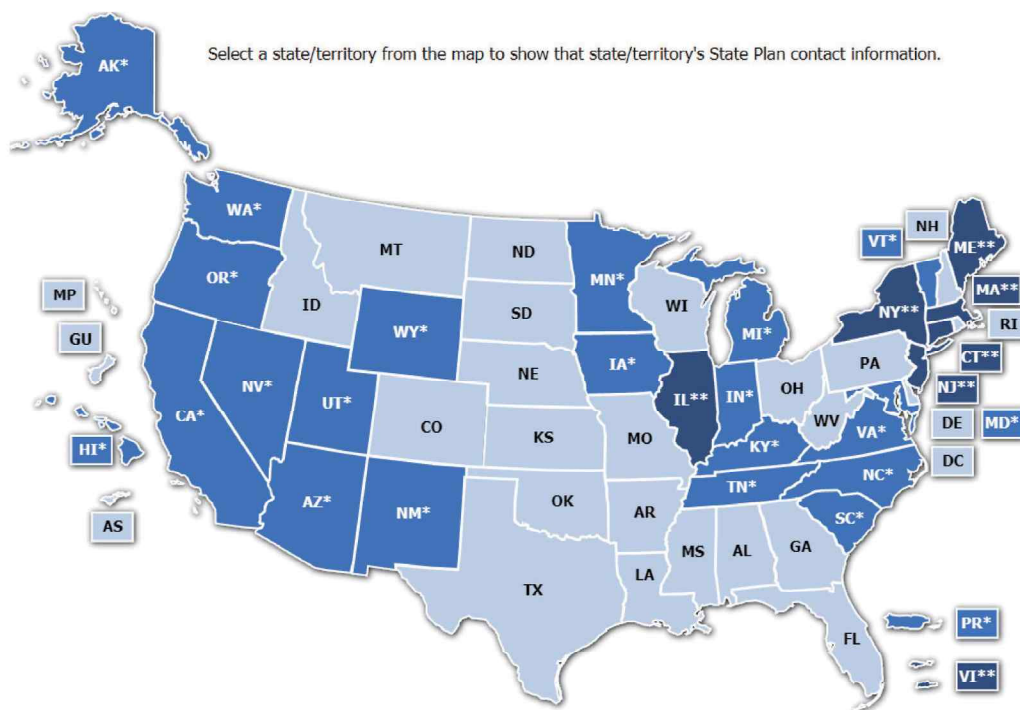
Section 33 – Appropriations

Section 34 – Effective Date

기타 – Historical Notes

- (주주 법)

- 산업안전보건 규율에 있어 주(州)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의 개입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¹¹⁾
 - 연방법은 주요한 가이드라인의 역할로서, 각 주의 주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나 연방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됨
 -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계획이 제시하는 기준, 실효성 확보조치 및 그 구조가 적어도 OSH Act와 동일한 수준의 실효성을 갖는 경우에 한해 주정부의 계획을 승인
- OSH Act 또는 주별 법규 준수 지역
- (OSH Act) 24개 주와 3개 미국령 및 D.C
 - (주별 법규) 21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는 민간·공공영역 모두 적용, 5개 주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공공영역만 적용하고 민간은 OSH Act 준수



* This state's OSHA-approved State Plan covers private and state/local government workplaces.

****** This state's OSHA-approved State Plan covers state/local government workers only.

☐ This state (with no asterisk *) is a federal OSHA state.

11) 산업안전보건규율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조흥학(2015), 26쪽

- 법의 적용

- 적용대상 : 미국 전체 56개 지역¹²⁾에 있는 모든 사업장
- 제외대상 : 프리랜서 등 self-employed 근로자, 가족농업, 타법* 적용 사업장* 연방광산안전보건법 등

- 근로자 참여제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다수의 주(州)에서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주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자가 참여토록 함¹³⁾

※ 사업장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주(州)

(2019. 6. 기준)

주(州)	설치 기준
앨라배마	근로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코네티컷	25인 초과하여 근로자 사용하거나 사고율이 높은 경우
미네소타	25인 초과하여 근로자 사용하거나 사고율이 높은 경우
몬타나	5인 초과하는 근로자 사용하는 경우
네브라스카	모든 사업장
네바다	25인 초과하는 근로자 사용하는 경우
뉴햄프셔	15인 초과하는 근로자 사용하는 경우
뉴욕	Group dividend plans
노스캐롤라이나	10인 초과하는 근로자 사용하거나 사고율이 높은 경우
오레곤	10인 초과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테네시	사고율이 높은 경우
버몬트	사고율이 높은 경우
워싱턴	10인 초과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웨스트버지니아	사고율이 높은 경우

- 캘리포니아 주는 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지만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 20세기말 기준, 사업장의 절반이상이 단체협약 내용에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주법 또는 단체협약 내용에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¹⁴⁾

12) 50개주, 콜롬비아 자치구, 북마리나제도, 괌, 아메리칸사모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13) David Weil(2004), p.30.

14) Watchman, Gregory R.(1994), p.81.

3. 의무이행 확보

(1) 감독

① 집행기구 : OSHA

② 감독관 채용

- 자격요건 :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원으로 정의
※ 안전보건감독관은 안전보건 위험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경력이 많은 자 또는 최신 교육훈련을 받은 인원으로 간주
- 채용기관 : 연방 인사국이 연방 정부기관들의 인사 및 채용을 전반적으로 관리
- 채용절차(예시)

구분	채용관련 공고 내용
1. 개요	- 접수기간, 직급, 임시·영구직 여부, 연봉, 전일제 여부, 근무 장소 등 관련 정보 게재 ※연방정부(usajobs.gov) OSHA 채용공고
2. 직무	- 임무, OSHA 법규제에 대한 지식 필요성 - 단속시 사업장 및 근로자와 의사소통 사항 - 감독 지식 및 기술 효과적 적용 필요성 - 단속 자료 수집·정리 임무 등
3. 지원조건	- 신원조회, 나이·시민권자 여부, 공무원 및 유사분야 근무경력, 학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평가사항 ※ 노동부 인사과 검토후 평가	- 기술적 역량, 언어적 의사소통 역량 - 글쓰기·집필 역량, 계획 및 평가 역량
5. 기타사항	- 혜택, 지원방법, 문의처 및 채용관련 법적 조항

③ 권한

- 감독관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와 역량을 지닌 인원으로 정의
- 작업장 진입 권한과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면담, 검사·테스트 또는 조사 실시,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조언 제공 등의 권한 부여
 - 주문 또는 통지 발행 권한
 - 재정적 벌금 부과 권한
 - 라이선스 또는 권한을 취소 또는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
 - 위험한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권한 등

④ 대상선정 및 진행과정

- 대상 : 미국(주, 준주, DC 등)에 있는 약 7백만개의 모든 감독 대상 사업장을 관할
- 선정 우선순위 : 급박한 위험상황, 심각한 부상·질병, 근로자의 진정·소개(Referrals), 기획 감독, 사후 감독 순
- 진행과정(사업장에 사전 통고 금지)

진행순서	주요내용
1	감독관 신분증 제시로 개시, 사업장 단속 이유 설명
2	단속·검사 과정의 전반적인 범위, 점검사항, 근로자 면담 등 사항에 대해 설명
3	사업장 순회하며 위험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
4	점검 후 총평 실시

⑤ 작업장-특정 기획 감독(SST, Site-Specific Targeting)¹⁵⁾ 【덧붙임】

- 29 C.F.R. § 1904.41¹⁶⁾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정보 활용
- 근로자 수 20명 이상 비건설업 작업장에 대한 OSHA의 주요 현장별 감독
- 주로 DART비율(Days Away, Restricted or Transferred Rate)¹⁷⁾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며, DART자료가 보고되지 않은 사업장 및 일부 낮은 DART 비율을 기록한 사업장과 함께 감독 대상에 포함
- 감독 목록 정확성 검증 위해 일반적으로 낮은 DART 비율을 기록한 사업장도 포함

15) <<https://www.fisherphillips.com/news-insights/workplace-safety-and-health-law-blog/oshas-latest-site-specific-targeting-inspection.html>>

16) 29 C.F.R. § 1904.41(a) Basic requirements - 1904.41(a)(1)

Annual electronic submission of OSHA Form 300A Summary of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by establishments with 250 or more employees. If your establishment had 250 or more employees at any time du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and this part requires your establishment to keep records, then you must electronically submit information from OSHA Form 300A Summary of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to OSHA or OSHA's designee. You must submit the information once a year, no later than the date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of the year after the calendar year covered by the form (for example, 2019 for the 2018 form). 1904.41(a)(2)

Annual electronic submission of OSHA Form 300A Summary of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by establishments with 20 or more employees but fewer than 250 employees in designated industries. If your establishment had 20 or more employees but fewer than 250 employees at any time du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and your establishment is classified in an industry listed in appendix A to subpart E of this part, then you must electronically submit information from OSHA Form 300A Summary of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to OSHA or OSHA's designee. You must submit the information once a year, no later than the date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of the year after the calendar year covered by the form. 1904.41(a)(3)

Electronic submission of part 1904 records upon notification. Upon notification, you must electronically submit the requested information from your part 1904 records to OSHA or OSHA's designee. 1904.41(a)(4)

Electronic submission of th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For each establishment that is subject to these reporting requirements, you must provide the EIN used by the establishment.

17) DART Rate는 100명의 정규직 근로자당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일수의 감소, 근무일수의 제한 또는 전근 등이 발생한 기록 가능한 사고 수를 정의하는 수학적 계산이다. 유사한 용어인 사고율(incident rate)은 모든 사고와 질병을 계산하지만 DART 비율은 기록 가능한 손실률을 계산한다.

- 감독 목록 정확성 검증 위해 일반적으로 낮은 DART 비율을 기록한 사용자도 포함
- 통상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5:5로 편성

⑥ 제재(사법처리 등): 민사벌(罰)과 형사벌로 구성

● 민사벌

- OSHA 지방사무소장(OSHA Area Director)의 소환장 발부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이의제출 시 직업안전건강검토위원회(OSHRC)의 판정 등의 절차로 집행되며, 노동부 장관은 민사벌의 추심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감독을 통하여 OSHA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OSHA 지방사무소장(OSHA Area Director)은 행정명령 또는 민사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소환장을 발부함
 - 소환장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떤 기준을 위반하였는지와 위험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사용자가 소환장에 기재된 민사벌(Civil penalties) 및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15 영업일 이내에 OSHA에 이의제출을 할 수 있음

● 형사벌

- 법무부(DOJ) 또는 주 검사의 기소(起訴)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행됨
- 1970년 OSHA 제정 이후 2021년까지 OSHA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115건에 불과함¹⁸⁾
- 최근 기소 건수 : 17년 19건, 18년 11건, 19년 4건, 20년 7건, 21년 9건
- 대부분의 OSHA 위반은 민사벌(Civil penalties)을 통해 해결되지만, 예측가능하고 쉽게 피할 수 있는 작업장 사망 등의 사건에 대한 형사소추와 같은 전통적인 경찰권한은 OSHA에 의해 선점되지 않음
- 연방 차원에서 OSHA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다수의 주(State)에서 주법(州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직장 또는 비자발적 과실치사(workplace or involuntary manslaughter), 형사 과실 살인(criminally negligent homicide), 무모한 위험(reckless endangerment) 및 폭행(assault)의 혐의로 형사소추를 한 사례가 있음¹⁹⁾
 - 2013년 필라델피아에서 지방 검사는 구세군 건물 붕괴로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수급인과 크레인 운전자를 기소하여 비자발적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었음²⁰⁾
 - 2018년 맨해튼 지방 검사는 미니 크레인이 떨어져 2명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건설현장의

18) <<https://aflcio.org/reports/death-job-toll-neglect-2022>>

19) <<https://www.epi.org/publication/fighting-workplace-abuses-criminal-prosecutions-of-wage-theft-and-other-employer-crimes-against-workers/>>

20) <<https://aflcio.org/reports/death-job-toll-neglect-2022>>

21) <<https://www.epi.org/publication/fighting-workplace-abuses-criminal-prosecutions-of-wage-theft-and-other-employer-crimes-against-workers/>>

22) <<https://www.epi.org/publication/fighting-workplace-abuses-criminal-prosecutions-of-wage-theft-and-other-employer-crimes-against-workers/>>

수급인을 폭행(assault) 혐의로 기소하였음²¹⁾

- 2019년 메인 검찰청은 추락에 대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지붕 공사 작업자가 추락한 사건에 대하여 수급인을 작업장 과실치사(workplace manslaughter)로 기소하였음²²⁾

(2) 수사

① 집행기구

- OSHA(29 USC § 651 et. seq.)의 집행은 민사벌(Civil penalties) 및 형사벌(Criminal penalties) 규정(29 USC § 666) 및 금지명령(Injunction) 규정(29 USC § 662)을 통하여 이루어짐
- 범위반에 대한 조사는 OSHA에서 수행함(Criminal Resource Manual(이하 “CRM”이라고 함) §2010)²³⁾

1) 민사벌

- 민사벌에 관한 집행절차는 노동부 법무관실(Solicitor's Office of DOL)²⁴⁾에서 수행함(CRM §2015)²⁵⁾
- 민사벌은 독립적인 준사법 기관(quasi-judicial)인 직업안전보건검토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 OSHRC)에서 평가함(29 USC § 661, 659, 666(c))
- OSHRC의 명령(order)에 대한 항소는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의 관할임(29 USC § 660)

※ 민사벌은 국고(國庫)에 귀속되며, 위반행위자가 민사벌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s)에 민사벌을 추심하기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29 USC § 666(k))

Type of Violation	Penalty Minimum	Penalty Maximum
Serious	\$1,036 per violation	\$14,502 per violation
Other-Than-Serious	\$0 per violation	\$14,502 per violation
Willful or Repeated	\$10,360 per violation	\$145,027 per violation
Posting requirements	\$0 per violation	\$14,502 per violation
Failure to Abate	N/A	\$14,502 per day unabated beyond the abatement date [generally limited to 30 days maximum]

23) <<https://www.justice.gov/archives/jm/criminal-resource-manual-2010-occupational-safety-and-health-act>>

24) <<https://www.dol.gov/agencies/sol>>

25) <<https://www.justice.gov/archives/jm/criminal-resource-manual-2015-osha-civil-penalties-and-enforcement>>

26) <<https://www.osha.gov/memos/2022-01-13/2022-annual-adjustments-osha-civil-penalties>>

- the Federal Civil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Act Improvements Act of 2015에 따라 2016년부터 연방 정부기관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민사벌의 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 2022년 2월 현재 OSHA 위반에 대한 민사벌 하한과 상한은 아래 표 참고²⁶⁾
- 위반의 종류²⁷⁾
 -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킬 잠재적 우려가 있는 위반
 - 경미한 위반(Other-Than-Serious Violation): 업무상 안전보건과 직접적 연관성 있지만,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고의적 위반(Willful Violation):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알면서 저지르는 위반을 말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유해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상황이 OSHA 기준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임
 - 반복적 위반(Repeat Violation): 어떤 기준이나 규정 등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했을 때 비슷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 개선 실패(Failure-to-Abate): 이전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을 하지 못했을 경우

2) 금지명령

- 금지명령(Injunction)의 관할은 금지 절차는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s)의 관할임(29 USC § 662)

② 수사개시 요건

1) OSHA의 소환장 발부와 이에 대한 이의제출

- OSHA는 사업장에서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소환장(written citation)을 발부함
- OSHA의 소환장의 내용(법위반 혐의, 제안된 처벌 등)에 사용자는 해당 소환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OSHA에 이의를 통지(Notice of Contest)하여야 함²⁸⁾
- 이러한 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OSHRC에서 분쟁을 해결할 자격을 상실함
- 사용자가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Notice of Contest를 제출하면, OSHA 지방사무소장(OSHA Area Director)은 해당 사건을 직업안전건강검토위원회(OSHRC)에 송부함²⁹⁾

27) 조흥학(2020), 산업안전보건법, p.111.

28) <<https://www.oshrc.gov/guide-to-review-commission-procedures.html/>>

29) <<https://webapps.dol.gov/elaws/elig/osha.htm#Penalties>>

30) <<https://www.oshrc.gov/about/administrative-law-judges/>>

- OSHRC는 사건을 소속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s, ALJ)에게 배당함(현재 OSHRC에는 11명의 ALJ가 있음)³⁰⁾
- ALJ의 판결에 대하여 사건의 당사자는 OSHRC에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OSHRC의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2) 형사 기소

- 노동부(DOL)는 형사사건을 법무부 형사과(Criminal Division of DOJ)에 회부함
 - 법무부 형사부는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prosecution)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장(appropriate United States Attorney)³¹⁾에게 회부함(CRM §2010)³²⁾
- ※ OSHA 위반에 대한 형사 기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평균 1년에 2-3건 정도). 다만, 최근 형사 기소를 확대하겠다는 OSHA의 의견표명이 있었음.³³⁾

③ 권한

- 노동부(DOL)는 OSHA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의 집행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다만 잠재적인 범죄혐의가 있으면 법무부(DOJ)에 사건을 회부(refer)함³⁴⁾
- 일단 사건이 법무부(DOJ)에 회부되면 법무부는 OSHA 위반 이외에 공모(conspiracy) 또는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와 같은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음

④ 제재 : OSHA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위반에 대한 형사벌 규정

1)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의 고의적인 행위(29 U.S.C. § 666(e))

- 29 U.S.C. § 666(e)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는 ① 피고인이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② 사용자가 29 USC § 665에 따라 공표된 “기준, 규칙 또는 명령 (standard, rule or order)”이나 OSHA에 따라 규정된 규정을 위반하였고, ③ 이러한 위반이 고의적이었으며, ④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4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함 (CRM §2012)³⁵⁾

2) OSHA 감독에 대한 공인되지 않은 사전통지의 제공(29 U.S.C. § 666(f))

- 노동부 장관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의 권한(authority)없이 OSHA의 감독을 사전에 통지한 사람³⁶⁾

31) <<https://www.justice.gov/usao/us-attorneys-listing>>

32) <<https://www.justice.gov/archives/jm/criminal-resource-manual-2011-osha-criminal-violations>>

33) <<https://www.hahnlaw.com/insights/osha-announces-enhanced-nationwide-enforcement-on-trenching/>>

34) <<https://www.shrm.org/resourcesandtools/legal-and-compliance/employment-law/pages/osha-penalties-run-the-gamut.aspx>>

35) <<https://www.justice.gov/archives/jm/criminal-resource-manual-2012-osha-willful-violation-safety-standard-which-causes-death>>

36) <<https://www.justice.gov/archives/jm/criminal-resource-manual-2013-osha-unauthorized-advance-notice-inspection>>

37) <<https://www.justice.gov/archives/jm/criminal-resource-manual-2014-osha-false-statement-representation-or-certification>>

3) OSHA에 제출된 문서 또는 OSHA에서 요구하는 문서에 허위 진술 또는 표시(29 U.S.C. § 666(g))

- 고의로 OSHA에 제출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신청서, 기록, 보고서, 계획서 또는 기타 문서에 거짓 진술, 진술 또는 인증(a false statement, representation, or certification)을 하는 행위(CRM §2014)³⁷⁾

(3) 특징

- 미국의 경우 OSHA 위반에 대하여 실제로 형사소추 및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
 - 이는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OSHA 위반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함³⁸⁾
- 미국의 경우 OSHA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사벌의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주로 우리법의 과태료와 유사한 민사벌(civil penalty)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에서는 2016년 이후 매년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민사벌(civil penalty)의 상한을 조정하여 민사벌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시에 조정하고 있음
-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형사벌 이외의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확대하여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적시에 행정적 이행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위법상태를 교정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실익이 있을 것임

38) <<https://www.shrm.org/resourcesandtools/legal-and-compliance/employment-law/pages/osh-penalties-run-the-gamut.aspx>>

4. 그간의 정책

(1) 기존에 시행한 주요 산재예방정책 및 사망사고에 미친 영향

- OSHA 전략 : 미국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유익한 근로환경 보장을 목표로 수립 시행중
 - (강력한 법 집행)산업안전보건에 중추적 역할은 ‘법 집행’을 기본으로 하여 법 사항 미준수 사용자에게 강력한 억제 적용
 - (안전보건 확보 지원)VPP 프로그램 등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망사고에 미친 영향은 파악 불가

(2) 최근 정책 동향

① 기업자율예방체계

-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집행을 통한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고자 4개의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장과 OSHA간의 자발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힘써오고 있음

구분	VPP*	SHARP**	OSPP***	AP****
지원방식	개별사업장 직접지원	개별사업장 직접지원	직접+간접지원	간접지원
도입시기	1982년	1992년	1998년	2002년
대상	대기업 위주 (최근 중소기업 참여율 증가)	250인 이하 중소기업	50인미만 사업장	희망 사업장
혜택	- VPP기준 충족·인정 후 1년간 정기 감독 면제 - VPP 참여사업장 간 정보공유	- 유해요인 개선·인정 후 1년간 정기 감독 면제 - SHARP 참여사업장 간 정보공유	-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운영지원 - 3년간 지속지원 - 성공사례 전파·공유	- OSHA와 협력관계 구축 - 정보·자료의 공동활용 - 우수사례 전파·공유

*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http://www.osha.gov/dcsp/vpp/index.html>

** Safety and Health Achievement Recognition Program, <http://www.osha.gov/dcsp/smallbusiness/sharp.html>

*** OSHA's Strategic Partnership Program, <http://www.osha.gov/dcsp/partnerships/index.html>

**** Alliance Program, <http://www.osha.gov/dcsp/alliances/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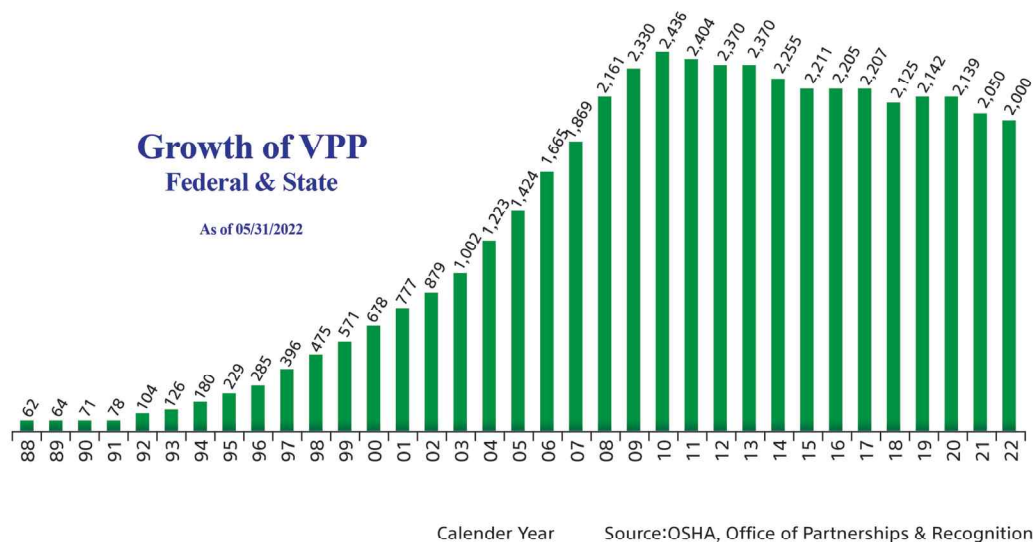
1)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VPP :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 개요

- 1982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VPP는 안전보건 의식이 확고한 대기업 사업장과 협력하여, 자율안전보건 체계를 인증해주는 프로그램 운영

※ 최근 중소기업 사업장의 VPP 참여가 증가하여 '22년도 연방정부 지원사업장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가 43.7%에 이르고 있음

- VPP프로그램은 동종업계 평균 재해율 미만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후 1년간 정기 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음 *자세한 신청사업장 자격은 [osha.gov/vpp](https://www.osha.gov/vpp) 내용 참고



● 대상 및 자격조건

- OSHA의 감독을 받는 모든 사업장은 VPP에 참여 가능
- VPP 지원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과 진행되고 있는 실행 기준에 맞춰 선정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의지 필요
- OSHA는 철저한 현장 평가와 현장 예방시스템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현장의 부상, 질병 정도를 재검토

● VPP 등급

- STAR : 산재율이 전국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작업장 유해위험요인들을 파악·개선할 자체적 능력 보유 사업장으로, 매년 3~5년마다 재인증 필요
- MERIT : 효과적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가졌으나 아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STAR 등급 사업장만큼의 역량을 3년 이내에 보여야 함
- STAR DEMONSTRATION PROGRAM : STAR 등급처럼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하 사업장이 법령상의 기준과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또는 안전보건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분야에서 우수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운영이 확인된 사업장

● VPP 종류 및 사업장 참여제도

- OSHA는 VPP 참여사업장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파생프로그램을 운영

구분	내용
VPP Challenge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현재의 안전보건 수준과 상관없이 VPP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VPP Corporate	현재 VP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동일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이 VPP 프로그램에 가입시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
VPP Construction	임시현장과 같은 건설현장이 안전보건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VPP 신청과 참여를 쉽게 하도록 지원

- 아울러 VPP프로그램은 VPP참여사업장에 대하여 VPP 현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SGE(Special Government Employe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8년 기준 약 1,500명의 SGE를 활용하고 있음

2) 안전보건성취인정프로그램(SHARP : Safety and Health Achievement Recognition Program)

● 개요

- OSHA의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받은 후,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지속하기 위한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시행하는 경우, OSHA가 이행 실태를 평가한 후 이를 인정하는 프로그램
- OSHA의 컨설팅(On-Site Consultation) 무료지원을 받음으로서 자율적인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고 해당 사업장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산업재해율 감소에 기여

● 참여대상 및 자격요건

-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단일, 고정사업장을 중심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된 2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OSHA에 직접 요청해야 하며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개선완료 필요
- OSHA 안전보건경영 지침서에 의거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며 전국 평균치 이하의 산업 재해율을 유지하고 신규 위험시설 설치 및 작업조건 변경 시 주 정부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필요

● 인증서 취득시 장점

- 컨설팅 무료지원, 자율 안전보건 프로그램 지속 운영, 생산성 증대, 산재감소, 감독 면제 혜택 등
- SHARP Alliance에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동종업종의 작업장 안전보건 모델로 소개되어 기업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

● 특이사항

- OSHA는 컨설팅 중 발견된 사업장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업주를 소환하지 않음
- 사업주명, 방문결과 등에 대해 OSHA는 기밀을 보장. 단, 사업주는 작업장의 변화, 신규 유해요인 발생시 OSHA에 즉시 보고 필요

3) 전략적 협력프로그램(OSPP : OSHA's Strategic Partnership Program)

- OSHA와 노·사 단체, 노동자 대표 또는 기타 단체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협력 프로그램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주요 목적은 유해요인의 제거,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품질의 근로자 안전 보건 수준 확보
- OSPP에 참가시 협력사항을 문서화하며, 검증은 OSPP참가기관 등 그들이 체결한 협정서 대로 운영되는지 OSHA가 검토 및 평가 실시

4) 협력 프로그램(AP : Alliance Program)

● 개요

- 미국 내 사업자의 증가, 규제중심의 이미지탈피, 다른 협력 프로그램의 활성화 도모, 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02년 3월에 제도 도입
- 기업체, 노동조합, 업종별 단체, 전문가협회,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 다양한 조직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현안과 기관들의 우선과제 해결을 지원
- 참여대상 및 자격요건은 목표 실행이 가능한 충분한 자원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 안전보건향상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가 있고 성과산출물을 전 사업장·근로자 등에게 공표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 참여대상 선정 우선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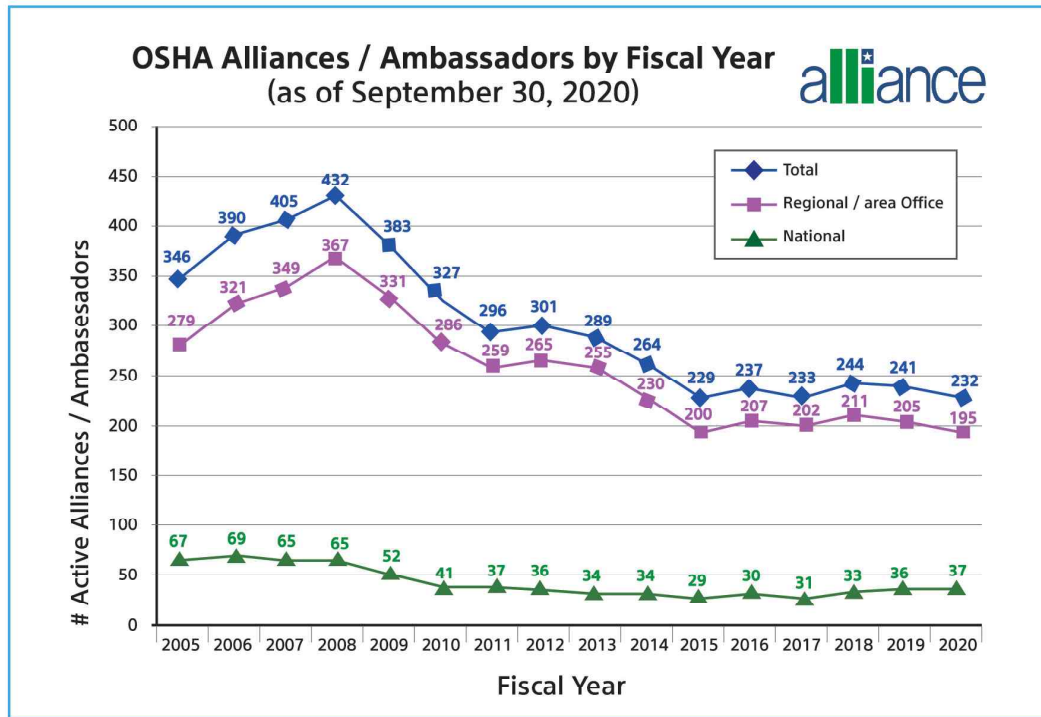
- 목표 실행 가능한 웹 사이트, 뉴스레터, 저널, 컨퍼런스 등과 같은 자원 보유 기관
- 교육과정을 개발·실시 가능한 조직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보유 기관
- 안전보건확산과 같은 특정 목표 달성과 협력해 주도적 역할 수행 가능 기관
- 성과산출물을 전 사업장, 근로자 등에게 공표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장

● 참여기관 활동내용

- OSHA가 마련한 표준계약 체결 후 상호협력 위한 목표는 3가지분야*로 구분
 - * ① 교육훈련, ② 정보공유 확산, ③ 작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 촉진(여론조성)

● AP 참여시 장점

- OSHA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 형성
-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공유
-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적극적인 활동기관으로서 인지도 획득



② 사업장 감독

: OSHA는 특정한 위험요인 및 고위험 산업에 집중하는 임시 사전 예방 감독 프로그램을 연방·주(state)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 NEPs(National Emphasis Programs), LEPs(Local Emphasis Programs)

구분	주요내용
NEPs	Combustible Dust (가연성 분진)
	Coronavirus(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Hazardous Machinery (유해위험 기계기구)
	Heat (고열)
	Hexavalent Chromium (6가 크롬)
	Primary Metal Industries (1차 금속 산업)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공정안전관리)
	Shipbreaking (선박해체)
	Silica, Crystalline (실리카, 결정화산업)
	Trenching and Excavation (굴착)
LEPs	총 1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109개의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시행중

③ 안전문화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미국 전역에 걸친 강조주간 행사를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수준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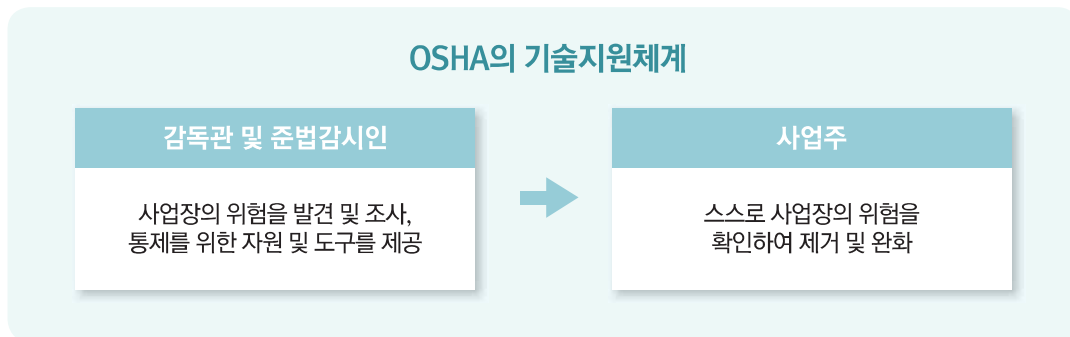
※ 미국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Safe+Sound Week)는 사업장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안전 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22년 강조주간 : 8. 15 ~ 8. 21)

- 또한 미국 몬타나(Montana)주에서 안전문화법(Safety Culture Act)을 제정하여 사업주 뿐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일반인·학생들에게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하게 하고 있음

④ 새로운 위험요인

: OSHA는 현행 사업장 기술지원체계 외에 변화하는 산업의 수요와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변화프로그램*(Variance Program) 운영

* OSHA 안전보건기준 준수를 위한 대안으로 개발



- 또한 국가지정시험소(Nat.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을 통해 전기충격, 감전, 폭발 관련 근로자 보호방안 연구 실시

【덧붙임】

작업장-특정 기획 감독(Site-Specific Targeting, SST)

[개관]

OSHA는 사업주가 제출한 “300A 양식(Form 300A)”의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장-특정 기획(SST) 감독 계획을 실시한다. 이러한 정보는 29 C.F.R. § 1904.41³⁹⁾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300A 양식(Form 300A)에서 직접 수집한다. 2022년의 경우 3월 중순까지 289,849개의 사업장에서 Form 300A 정보를 OSHA에 제출했다.⁴⁰⁾

전통적으로 SST는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비건설업’ 작업장에 대한 OSHA의 주요 현장별 대상 검사 계획이었다. 주로 DART 비율(Days Away, Restricted or Transferred Rate)⁴¹⁾이 높은 사용자들이 일부 보고되지 않은 사용자 및 일부 낮은 DART 비율을 기록한 사용자와 함께 OSHA의 SST 감독 목록에 포함되어왔다. 감독 목록의 정확성(accuracy)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낮은 DART 비율을 기록한 사용자도 포함한 것이다(이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목록에 별표(*) 2개로 특정한다). 감독 목록에는 통상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5:5로 편성한다.

한편, DART 비율은 OSHA가 300A의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휴무, 근무제한 및 전근일에 200,000을 곱한 값을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근로한 전체 시간으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한다. DART 비율은 OSHA 정보시스템(OSHA Information System, OIS)에 저장된다.

$$\text{DART rate} = (\text{Total number of DARTs} \times 200,000) \div \text{Total hours worked}$$

39) 29 C.F.R. § 1904.41(a)

Basic requirements –
1904.41(a)(1)

Annual electronic submission of OSHA Form 300A Summary of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by establishments with 250 or more employees. If your establishment had 250 or more employees at any time du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and this part requires your establishment to keep records, then you must electronically submit information from OSHA Form 300A Summary of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to OSHA or OSHA's designee. You must submit the information once a year, no later than the date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of the year after the calendar year covered by the form (for example, 2019 for the 2018 form).

1904.41(a)(2)

Annual electronic submission of OSHA Form 300A Summary of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by establishments with 20 or more employees but fewer than 250 employees in designated industries. If your establishment had 20 or more employees but fewer than 250 employees at any time du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and your establishment is classified in an industry listed in appendix A to subpart E of this part, then you must electronically submit information from OSHA Form 300A Summary of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to OSHA or OSHA's designee. You must submit the information once a year, no later than the date list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of the year after the calendar year covered by the form.

1904.41(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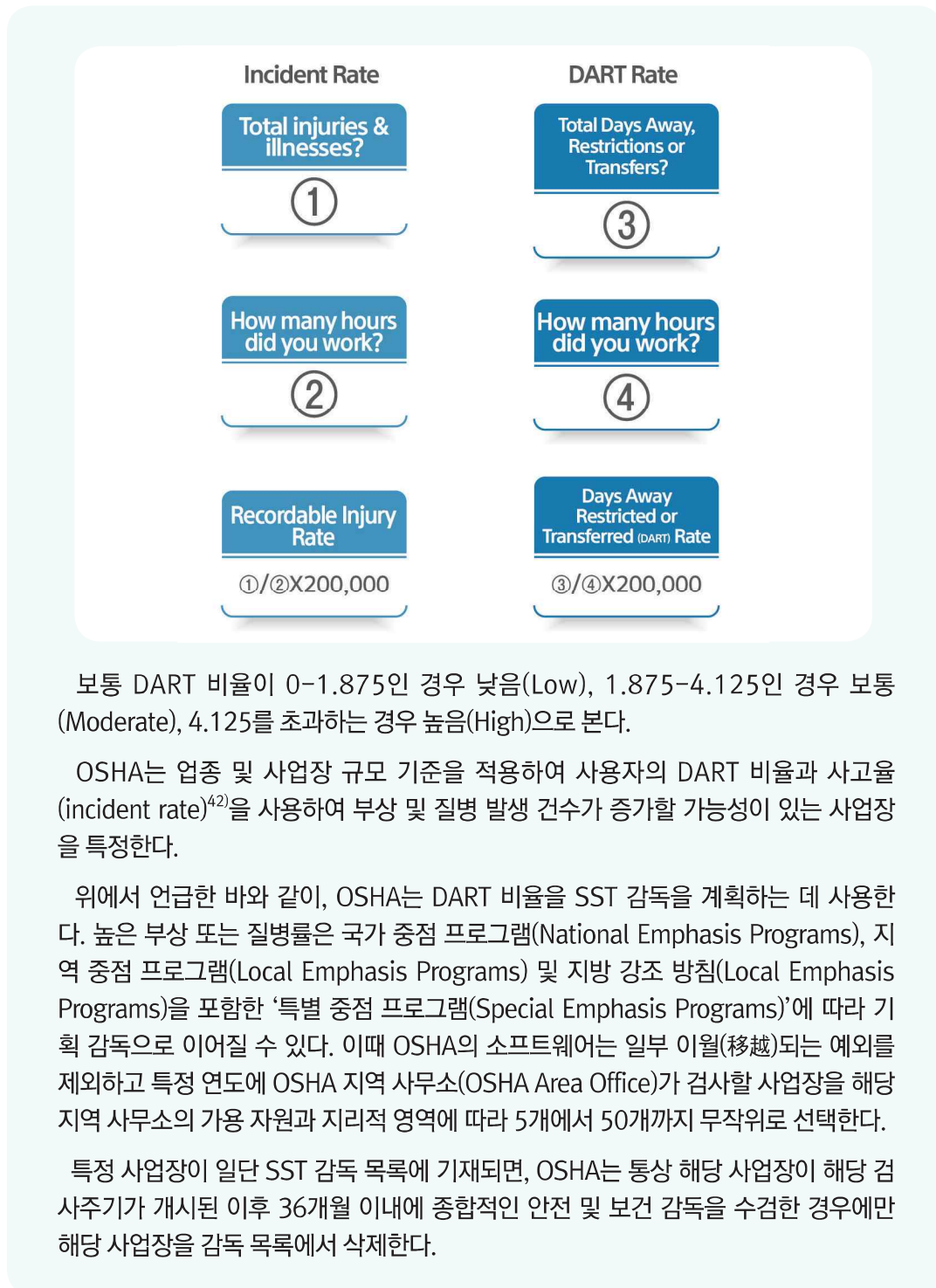
Electronic submission of part 1904 records upon notification. Upon notification, you must electronically submit the requested information from your part 1904 records to OSHA or OSHA's designee.

1904.41(a)(4)

Electronic submission of th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For each establishment that is subject to these reporting requirements, you must provide the EIN used by the establishment.

40) (<https://www.osha.gov/news/newsreleases/trade/04052022>)

41) DART Rate는 100명의 정규직 근로자당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일수의 감소, 근무일수의 제한 또는 전근 등이 발생한 기록 가능한 사고 수를 정의하는 수학적 계산이다. 유사한 용어인 사고율(incident rate)은 모든 사고와 질병을 계산하지만 DART 비율은 기록 가능한 손실률을 계산한다.



42) 사고율(incident rate)은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건수×200,000)÷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값으로, 특정 기간 중 하나의 기업 내 여러 사업 부문 간 또는 기업 간의 상대적인 부상 및 질병 발생률을 보여주는 데 사용된다.

[Site-Specific Targeting inspection plan for non-construction worksites[CPL 02-01-062]]⁴³⁾

OSHA는 2020. 12. 14. 자 Site-Specific Targeting inspection plan for non-construction worksites[CPL 02-01-062]을 통하여 기존의 Site-Specific Targeting 2016(SST-16)을 대체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자들이 제출한 Form 300A 정보를 사용하여 SST 감독 계획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정 계획은 종던 SST 계획과 동일하게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SHA의 입장은, 모든 SST 감독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 감독의 범위가 포괄적(comprehensive in scope)이라는 점이다. 지역 책임자(Area Director)는 사업장의 특성에 대한 지역 사무소의 지식을 바탕으로 SST 감독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감독을 ‘종합 안전 또는 보건 감독(comprehensive safety or health inspection)’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SST 감독 계획에 따라 감독대상이 사용자는 OSHA가 진정이나 사고의 발생에 따라 개시된 감독의 경우보다 소환(citations) 및 처벌(penalties)의 가능성이 높다. OSHA가 이전에 작업장을 감독한 경우, 지역 책임자는 이러한 기존의 감독 이력에 근거하여 건강 및 안전 위험 모두(both health and safety)를 포함하도록 감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한편, SST-16에 대한 시행 경험에 기초하여, 2020년 개정 SST 계획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 기간 동안 재해율 증가 속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장 범주가 추가되었다.

43) 2020. 12. 14. 자 "Site-Specific Targeting inspection plan for non-construction worksites" [CPL 02-01-062]. 원문은 <https://www.osha.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directives/CPL_02-01-062.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